## 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나경원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54

발의연월일: 2024. 5. 31.

발 의 자: 나경원·박덕흠·이헌승

이인선 · 김성원 · 이종배

송석준 • 유상범 • 김예지

이만희 · 김정재 · 백종헌

엄태영 · 김석기 · 박상웅

서지영 · 강명구 · 김소희

의원(18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3년 기준 국내 합계출산율은 역대 최저수준인 0.72명을 기록하는 등 저출산 문제는 현재 우리나라가 직면한 가장 시급한 과제로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고용, 복지, 교육, 주거 등 종합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함.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저출산에 대응하기 위한 예산은 2006년 이후 2023년까지 총 379조 8천억원으로,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었음에 도 출생아 수는 지속적으로 줄고 있어 기존의 저출산 대응사업의 타 당성과 효과성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특히 주거문제와 관련하여 그동안 정부는 저출산 대응과 주거취약 계층인 청년·신혼가구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 진해왔으나, 최근의 주거비(주택가격, 전세가격 등) 부담의 지속적인 증가는 결혼·출산 의사결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어 더욱 획기적이고 개선된 정책 마련이 필요한 상황임.

최근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조사에선 신혼부부가 가족계획을 세울 때우선 고려하는 부분으로 '안정적 주거환경'이 40.6%를 차지, 결혼과 출산에 가장 큰 어려움으로 거주문제를 꼽음.

이에 신혼부부가 2억원 이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의 주택자금(주택구입비 또는 임차보증금)을 연 1% 이내의 초저금리로 대출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는 금융기관의 대출금리와 신혼부부가 실제부담하는 지원금리 간 차액을 보전하도록 하며, 신혼부부가 자녀를 출산한 경우 출산한 자녀의 수에 따라 대출금의 이자와 원금을 지원하도록 함으로써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여 저출산 문제 해결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6조의2 신설).

법률 제 호

## 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주거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제16조의2(결혼 및 출산 장려를 위한 주거금융지원) ① 국가는 혼인한 날(「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혼인신고일을 기준으로 한다)부터 5년 이내인 사람과 주택 취득일 또는 주택 임차일부터 6개월 이내에 혼인할 예정인 사람(이하 "신혼부부"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이 금융기관에서 주택구입비 또는 임차보증금을 대출(주택구입비 대출의 경우 상환기간이 20년인 경우에 한한다)할 경우 그 대출금리와 지원금리 간의 차액을 보전(이하 "이차보전"이라 한다)하여야 한다.
  - 1. 주택 취득일 또는 주택 임차일 현재 신혼부부로서 본인과 배우자 (배우자가 될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그 자녀모두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할 것. 이 경우 본인과 배우자 및 그자녀가 주택 취득일 또는 주택 임차일 현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 2. 주택 취득 또는 주택 임차 연도 직전 연도의 신혼부부의 합산 소

득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하일 것

- ② 제1항의 지원금리는 연리 1퍼센트 이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③ 제1항에 따라 이차보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주택구입비 또는 임차보증금의 한도는 2억원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으로 한다.
- ④ 제1항에 따라 이차보전 지원을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차보전 지원을 중단하고 일반대출로 전환한다.
- 1. 혼인할 예정인 신혼부부가 주택 취득일 또는 주택 임차일부터 6 개월 이내에 혼인하지 아니한 경우
- 2. 혼인신고일부터 7년 이내에 자녀를 출산하지 아니한 경우
-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 ⑤ 국가는 제1항에 따라 이차보전 지원을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이차보전 지원을 받은 사람에게 반환할 금액을 통지하여야 하고, 해당 이차보전 지원을 받은 사람은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를 납부하여야 한다.
- 1. 혼인할 예정인 신혼부부가 주택 취득일 또는 주택 임차일부터 6 개월 이내에 혼인하지 아니한 경우
- 2.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 ⑥ 국가는 제5항에 따라 지원받은 이차보전금액을 반환하여야 할

사람이 납부기간까지 그 금액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 강제 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 ⑦ 국가는 신혼부부가 제1항에 따른 대출금의 상환기간 중 자녀를 출산한 경우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제1항에 따른 출생신고일부터의 대출금의 이자 전액을 지원하고, 출산한 자녀의 수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대출금의 원금을 지원한다.
- 1. 2명인 경우: 원금의 3분의 1
- 2. 3명인 경우: 원금의 3분의 2
- 3. 4명 이상인 경우: 원금 전액
- ⑧ 제7항에 따라 이자 및 원금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대출금의 한도는 2억원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으로 한다.
- ⑨ 국가는 제1항에 따른 이차보전금액과 제7항에 따른 이자 및 원금 지원금액을 부담할 수 있도록 재원을 조성하여야 한다.
- ⑩ 제1항에 따른 이차보전 사업과 제7항에 따른 이자 및 원금 지원사업의 절차, 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이차보전 지원대상에 관한 적용례) 제16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법 시행 전에 혼인신고를 하고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에 대하여

도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16조의2(결혼 및 출산 장려를
	위한 주거금융지원) ① 국가는
	혼인한 날(「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혼인
	신고일을 기준으로 한다)부터
	5년 이내인 사람과 주택 취득
	일 또는 주택 임차일부터 6개
	월 이내에 혼인할 예정인 사람
	(이하 "신혼부부"라 한다)으로
	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u>갖춘 사람이 금융기관에서 주</u>
	택구입비 또는 임차보증금을
	대출(주택구입비 대출의 경우
	상환기간이 20년인 경우에 한
	한다)할 경우 그 대출금리와
	지원금리 간의 차액을 보전(이
	하 "이차보전"이라 한다)하여야
	<u>한다.</u>
	1. 주택 취득일 또는 주택 임차
	일 현재 신혼부부로서 본인과
	배우자(배우자가 될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
	다) 및 그 자녀 모두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할 것. 이 경우 본인과 배우자 및 그 자녀가 주택 취득일 또는 주택 임차 일 현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 는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 2. 주택 취득 또는 주택 임차 연도 직전 연도의 신혼부부의 합산 소득이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기준 이하일 것
- ② 제1항의 지원금리는 연리 1 퍼센트 이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③ 제1항에 따라 이차보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주택구입비 또는 임차보증금의 한도는 2억원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으로 한다.
- ④ 제1항에 따라 이차보전 지원을 받은 사람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차보전 지원을 중단하고 일반대출로 전환한다.
- 1. 혼인할
   예정인
   신혼부부가

   주택
   취득일
   또는
   주택
   임차

일부터 6개월 이내에 혼인하지 아니한 경우

- 2. 혼인신고일부터 7년 이내에 자녀를 출산하지 아니한 경우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 ⑤ 국가는 제1항에 따라 이차 보전 지원을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이차보전 지원 을 받은 사람에게 반환할 금액 을 통지하여야 하고, 해당 이차 보전 지원을 받은 사람은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에 이를 납부하여야 한다.
- 1. 혼인할 예정인 신혼부부가주택 취득일 또는 주택 임차일부터 6개월 이내에 혼인하지 아니한 경우
- 2.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 ⑥ 국가는 제5항에 따라 지원 받은 이차보전금액을 반환하여 야 할 사람이 납부기간까지 그 금액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 는 국세 강제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① 국가는 신혼부부가 제1항에 따른 대출금의 상환기간 중 자녀를 출산한 경우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4 4조제1항에 따른 출생신고일부터의 대출금의 이자 전액을 지원하고, 출산한 자녀의 수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대출금의 의원금을 지원한다.

- 1. 2명인 경우: 원금의 3분의 1
- 2. 3명인 경우: 원금의 3분의 2
- 3. 4명 이상인 경우: 원금 전액
- ⑧ 제7항에 따라 이자 및 원금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대출금의 한도는 2억원 이상으로서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으로 한 다.
- ⑨ 국가는 제1항에 따른 이차 보전금액과 제7항에 따른 이자 및 원금 지원금액을 부담할 수 있도록 재원을 조성하여야 한 다.
- <u>⑩</u> 제1항에 따른 이차보전 사 업과 제7항에 따른 이자 및 원

금 지원사업의 절차, 방법 및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